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 의안 번호 | 673 |
|---|---|

2026. 2. 24.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12. 우종혁 의원 등 6인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 구성원의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학업·취업·정서 발달 등 삶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주거·교육·정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개요

□ 우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안은 가족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 배경 및 타당성

○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수당과 보조금 지원, 돌봄 시간 단축 등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을 하고 있었음.

○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적인 조사 및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 그러다 지난 2021년 5월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대구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2022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제정으로(2026. 3. 26. 시행)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되었음.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

을 넘어 향후 진로·생계 등 생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이들이 겪고 있는 특수하고 종합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는 관계 법령상의 지자체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본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료 됨.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시행 중임.

## Ⅱ.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정책 대상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위기아동청년법과 비교해 볼 때 용어와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위기아동청년법과 달리 제정안에서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서울시 및 강남복지재단의 관련 사업의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의 용어나 연령을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가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용어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런데 위기아동청년법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제정안의 성격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상의 지자체의 사무를 구체화한 자치조례라 볼 수 있음.

○ 물론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해석과 법령 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국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무의 성격, 관계, 법률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자치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할 수는 있음.

○ 또한, 판례는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법령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

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방법, 지원의 내용 등을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의 입법 목적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기준을 폭넓게 정함으로써 이들에게 강남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 됨.

○ 다만, 향후 위기아동청년법 개정 등으로 조례 위임 사항이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정책의 효과적 수행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용어와 연령 기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6조(실태조사 등)**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동안 강남구 차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제정안을 계기로 관내 지원 대상자 현황과 정책 수요 파악 등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된다면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안 제5조제1항),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3항).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간 단위(5년)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위기아동청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5년 단위)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지원 사업)**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지원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안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한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복지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 밖에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는 용어가 오기재된 부분과 해당 용어의 띄어쓰기가 통일성 없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br>② (생 략)<br>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br>② (제정안과 같음)<br>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 --- |
|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br>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br>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br>3.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br>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br>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br>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br>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br>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br>9.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br>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br>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br>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br>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br>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br>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br>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br>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br>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br>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br>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 --- |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Ⅲ. 종합 의견

□ 종합하자면, 본 제정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성장 단계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남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위기아동청년법이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하나 정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정보 접근성 부족,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사회적 낙인 우려 등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복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접근 채널 및 전달체계 구축, 신속한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맞춤형 통합 관리 등의 세심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 관련의안번호 |
| --- |
| 제673호 |

제안일자 : 2026.2.24.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 1. 수정이유

○ 용어를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오기재된 부분 및 용어의 띄어쓰기 등 통일된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세 살”을 “3년”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가족돌봄 청소년·청년 ------<br>----------<br>----------<br>----------.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br>(생 략)<br>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br>(제정안과 같음)<br>③ ----------<br>----------<br>----------<br>----------<br>- 기본계획----------<br>-. |
|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 기본계획----------<br>- 가족돌봄 청소년·청년-----<br>----------<br>----------<br>----------. |
|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 제7조(지원 사업) ①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 |
|---|---|
| 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8. (생 략) | 8. (제정안과 같음) |
| 9.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10. (생 략) | 10. (제정안과 같음) |

| | |
|---|---|
| ② (생 략) | ② (제정안과 같음) |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 --. |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기관등----------. |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 ---------- ---------- ---------- 3년---------- ----------. |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 ----------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 | |
|---|---|
| 스를 제한할 수 있다. | |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 ---------- 목적 외-------- --------- 아니 된다. |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우종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673 |
|---|---|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우종혁·김현정·이도희·
김영권·한윤수·강을석 의원
(이상 6인)

## 1. 제안이유

가족 구성원의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학업·취업·정서 발달 등 삶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주거·교육·정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